

## 삼성전자 AXDIMM Use Case Challenge 이용약관

### 제 1 조[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디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창작자에게 당연히 발생하거나, 별도의 절차에 의해 창작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AXDIMM Use Case Challenge'라 함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시상 등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을 말한다.
3. '회사'라 함은 공모전을 주최·주관하는 삼성전자 주식회사를 말하며, 필요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적법한 권리·권한을 위임 받아 공모전을 운영·지원하는 업체를 포함한다.
4. '응모자'라 함은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응모한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한다.  
(※ 단, '프로그램'에 따른 실제적인 지원자격은 지도교수 1인과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사/석사/박사 과정의 학생으로 구성된 5인 이하의 팀이어야한다.)
5. '참여자'라 함은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신청한 응모자 중, 회사의 심사·평가 등의 절차를 통과하여 선발된 자를 말한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 제 2 조[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주최하는 공모전의 참여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 응모자의 아이디어(이하 '초기 아이디어'라 함) 및 이를 개선·발전시킨 아이디어(이하 '최종 아이디어'라 함)에 관한 응모자와 회사와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응모자가 본 약관과 함께 교부되는 '지원서' 등을 작성하여 회사에 송부한 경우에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제 3 조[아이디어 개선·발전의 수행]

- ① 응모자는 회사와 함께 초기 아이디어를 변형하여 개선·발전시키는데 동의한다.
- ② 응모자와 회사는 본 약관에 따른 초기 아이디어의 개선·발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 4 조[응모 제한 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단체는 본 공모전에 응모할 수 없다.

1. 동일(유사) 아이디어로 타 공모전에 수상 경험이 있는 자
2. 신청서 등의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자
3.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타인과 특허분쟁이 진행 중인 아이디어
4. 타인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디어
5.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아이디어

### 제 5 조[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귀속]

- ① 본 공모전의 선발 과정에서 응모된 초기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
- ② 초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시킨 최종 아이디어가 개량적 효과가 없어 실질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
- ③ 초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시킨 최종 아이디어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개량적 효과를 가져 초기 아이디어에서 회사의 기여에 의해 실질적으로 발전된 경우에는 최종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회사와 응모자의 공유로 하며, 이때 회사와 응모자의 지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 6 조 [응모자의 의무]

- ① 응모자는 그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가 '참여자'로 최종 선발된 이후라도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 자격 및 권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을 인지한다.

② 응모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제 3자와 사이에 표절시비 또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응모자에게 책임이 있다. 단, 응모자는 위 분쟁의 발생, 진행사항을 즉시 회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 7 조 [응모된 아이디어의 외부 제공]

① 회사는 응모자로부터 제공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응모자의 동의 없이는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인 경우
2. 공모전 운영 및 선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 3자에게 응모자의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당해 제 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응모자는 신청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회사의 동의 없이는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응모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응모자가 '참여자'로 최종 선발된 이후라도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 자격 및 권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 8 조 [자료의 반환 및 폐기]

① 응모자는 '참여자'의 최종 선발 결과 발표일 이전에는 제안한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련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응모자는 '참여자'의 최종 선발 결과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반환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적절한 방식에 의해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반환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제 2 항에 기하여 응모자에게 반환되는 자료가 물리적 형태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반환이 어려울 경우, 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참여자'의 최종 선발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도 응모자로부터 제 2 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응모자의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다만, 본 '참여자'로 최종 선발되어 회사와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 9 조 [후속절차 진행 및 참여자 선정, 지원 등]

- ① 1 차적으로 선발된 응모자에 한하여 후속절차인 단계별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 ② 후속절차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참여자로 선정되면, 회사는 최종 선발된 참여자와 별도의 협약서, 약정서 등 체결을 통해 일정한 지원금과 향후 진행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 ③ 참여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전항에 따른 회사와의 협약서 등 체결을 거부하거나 자발적으로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소정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참여자로서의 지원받기 위한 최종적인 권리는 전항의 협약서 등 체결과 동시에 발생된다.
- ④ 회사와 참여자는 최종 아이디어가 도출되면 제 5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최종 아이디어의 개량적 효과 여부와 양방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권리 귀속 및 공유시 지분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⑤ 응모자가 '참여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는 해당 아이디어에 관하여 산학협력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와 응모자는 협의하여 협력 여부를 정하기로 한다.

#### 제 10 조 [참여자의 아이디어에 대한 우선협상권]

회사가 아이디어에 대한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상금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응모자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어의 권리에 대한 사용권 허락 또는 양도에 대하여 우선협상권을 가진다.

## 제 11 조 (권리의 사용)

- ① 응모자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가지며 회사가 그 아이디어의 사용권을 허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응모자와 별도로 사용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가, 범위, 기간 등 사용권 허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응모자로부터 제출 받은 아이디어 및 관련 자료 일체를 공모전 운영 및 선정·개발·평가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전항에 따른 사용 범위에는,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공모전 홍보, 당선작 전시 등 공모전의 개최 목적이나 진행 과정에서의 적절한 부수적인 활용을 포함한다.
- ④ 선발된 아이디어는 회사와 응모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용허락을 얻어 보완 또는 변형될 수 있으며, 공모전 진행 과정에서의 인쇄, 전시, 홍보, 교육 및 보도자료 제작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제 12 조 (권리 양수도)

회사는 응모자가 보유한 아이디어에 관한 권리 또는 그 지분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응모자와 별도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방법 등 양수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 13 조 [손해배상]

응모자, 참여자 또는 회사가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당사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일체의 손해도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제 14 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약관 내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와 회사는 우선적으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회사와 응모자의 개별 합의를 거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 제 15 조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한 후에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